

정보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와 정책

김 형 만†

Study on the Policy for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Information Society

Hyung-Man Kim†

ABSTRACT

Crime victims have had features of both causing a crime and the object of protection from the society. Thes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have led to develop victimology. As the result, the classification of the victim has been generalized. Direct damage caused by the crime victim is grouped into the first damage, and collateral damages caused by the 1st one are could be identified as the 2nd or the 3rd one. In this paper, it is aimed that problems of victim classification in Korea have been studied by comparing foreign countries' classification.

Key Words : Information society, Victimization,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s, Victimology, Parties in cases, Join lawsuit

1. 서론

범죄피해자는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 또는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잃어버린 존재」였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인 범인의 권리은 보호하면서도 그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는 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조차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은 「증거품」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 이외에 부수적으로 제2차 및 제3차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필요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부교수

논문접수: 2010년 8월 2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0년 8월 24일
본 논문은 2010년 광주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하다는 주장이 19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특성이 가져 온 피해자학의 변천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분류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피해자와 피해자학

2.1. 피해자와 피해자학의 특성

피해자(Victim)의 어원은 「의식(儀式)」 중에 신에게 바치는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산체물」을 의미한다고 한다[1]. 그 후 피해자라고 하는 용어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선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로 인한 부상, 상실 또는 가혹한 운명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고, 현재에는 범죄, 사고, 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피해자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는 범죄원인으로서 특성과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어, 이것이 피해자학(Victimology)의 변천을 이끌어 왔다.

2.2. 피해자학의 변천

암흑재판을 비판해 온 계몽사상 하의 유럽은 형사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형벌권을 국가에 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국가와 개인에 대한 것으로 구별하여 국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권을 행사하고, 개인에 대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써 민사법에 맡겼다. 또한 범죄의 본질도 집단통제에 대한 명령·금지의 불복종이나 그 위반으로 파악하여 결국 구체적인 피해는 범죄현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형사사법은 「범행과 범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범죄와 형벌」의 문제로 그 중심이 변질되었다[2].

이로써 형사절차는 오로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어 범죄의 대상이자 실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었음은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미명 하에 그 절차를 통한 제2차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지위로 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 범죄학에 있어서도 범죄의 행위과정에 대한 완전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행위자인 범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검토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범죄는 피해자와 행위자인 범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항상 확정적이 않기 때문에 발생된 특정한 피해를 주목하여 복수의 대립된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피해자이고, 다른 일방이 가해자·범인으로 사후적으로 판정되는 경우조차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단순히 범죄 행위자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다른 일방인 피해자에게도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1940년대 후반에 행하여진 헨티히(Hans von Hentig)에 의한 일련의 피해자연구와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에 의하여 주장된 피해자학도 본래 관심의 대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초기의 피해자학은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 단지 피해자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의 피해자학은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러나 범죄를 전제로 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를 고찰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빈 집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경우에 「범죄」를 전제로 하면 주거침입죄와 재물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피해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에게는 그 밖에도 신을 신은 채로 집을 뒤졌다거나, 금품을 찾기 위해서 장롱 속을 헤집어 놓았다는 등의 「피해」로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3].

더구나 스토키, 성희롱 또는 악덕상술 등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성립

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논하더라도 피해자는 반드시 존재한다. 또한 범죄와 무관계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있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까지도 포함시켜 논한다면 피해자학은 범죄피해자학으로부터 일반피해자학으로 발전하고 있다[4].

이와 같은 변천의 이면에는 「범죄의 중대성」 보다는 피해자가 처한 「피해의 심각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피해자학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피해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심화해 가는 한편, 실천적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피해자 없는 범죄」의 존재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피해를 특정한 개인에 한정한다고 전제하면 도박·음화반포, 약물의 자기사용 등은 피해자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를 법익의 주체로 파악하는 한, 모든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주장은 실제로 미국 등에서 「비범죄화」, 즉 동성애나 임신초기의 중절행위를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이론으로써 기능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3.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분류

위와 같은 피해의 분석에 의한 피해자학의 이론적 심화는 피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즉 피해자화(Victimization)에 따라 제1차 피해, 제2차 피해, 제3차 피해로 분류하는 것을 일반화시켰다. 제1차 피해와 제2차 피해, 제3차 피해는 제1차 피해를 기점으로 연동(連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피해가 독립된 것이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피해자학의 분류에 따라 그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제1차 피해와 그 대책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 입은 피해

를 「제1차 피해」라고 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정신적(심리적) 피해 등이 있으며, 초기 피해자학은 이러한 제1차 피해만을 범죄피해의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2006년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피해 가운데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심리적 피해가 39.3%, 가장 심각하고, 경제적 피해 25.4%, 신체적 피해 24.8% 순으로 나타나 모든 측면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제1차 피해에 대해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¹⁾이 19세기말 페리(E. Ferri), 가로팔로(R. Garofalo) 등에 의하여 주장되어 형사절차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사회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입법에는 이르지는 않았다. 1964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피해자보상을 입법화 한 뉴질랜드는 범죄피해자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을 실시하여 일정한 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은 자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6].

그 후 1970년대 후반까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도 그 영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보급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1970년대 묻지 마 살인과 폭탄테러와 같은 사회문제를 계기로 무고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하여 1980년에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은 고의의 범죄행위로 무고하게 사망한 자의 유족 등에게 사회연대의 공조정신에 따라 급부금을 지급하여 그 정신적·경제적 충격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영국의 사회운동가였던 프라이(M. Fry)다. 그는 「피해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Victims)」라는 논문에서 민간인의 입장으로 형벌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범인의 인권옹호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옹호로 눈을 돌리고 형사사법에 있어서 범인과 피해자 쌍방의 균형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3.2. 제2차 피해와 그 대책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제1차 피해자화 이외에 그 범죄로 인하여 부수적(附隨的)으로 초래되는 다양한 피해를 「제2차 피해」²⁾라고 한다. 다만 여기서는 형사절차상 경찰·검찰·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입는 피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반복되는 범죄사실의 신문과정에서 입는 피해와 현장검증의 입회 등으로 장기간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있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형사절차상 필요하더라도 그 절차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자의 권위적인 태도나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인 제2차 피해를 입게 된다. 더구나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정보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피해자인 절차에도 참가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잃어버린 존재」인 피해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제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라고 하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이 1980년대부터 각국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범죄피해자가 단순한 보호³⁾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절차상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에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로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에 「참가」 할 것인가는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소송구조에 따라 상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사회복귀모델의 쇠퇴 및 정의모델의

대두, 범죄증가에 의한 형사사법의 사회적 불신을 씻어내기 위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개선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9년 위스콘신주를 시작으로 「피해자의 권리장전(Victims Bill of Rights)」이 각주에서 제정되었고, 1982년에는 최초로 미의회에서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ictims and Witness Protection Act)」 등을 비롯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확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피해자의 권리는 그 집행력에 한계를 보여, 연방헌법에 피해자의 권리를 직접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에 「범죄피해자권리법(The Crime Victim's Right Act)」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상 독립한 참여자(independent participant)로서 인정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을 제정하였다[7].

이에 대하여 독일과 일본은 미국과 같이 범죄피해자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미국(일부의 주)과 달리 공소제기 후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구별된다[8].

특히 독일은 기본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을 근거로 형사재판의 목적이 질서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다고 해석하여 일정한 중죄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공소참가(Nebenklage)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⁴⁾. 이에 따라 1986년 「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은 정보의 획득과 서류의 열람 등 피해자의 절차참여를 인정하고, 증인이 된 경우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대사소(附帶私訴)의 적용범위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

2) 제2차 피해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부수적으로 입는 피해로서 i)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피해, ii) 보도기관에 의한 피해, iii) 의료종사자에 의한 피해, iv) 주변인에게 입는 피해 등이 있다.

3) 「보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물론 피해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신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주로 제2차 피해로부터 보호가 문제가 된다.

4)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제402조는 강간, 상해, 감금 등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위법행위에 의하여 상망한 자의 유족, 사인소추의 권리를 갖는 자 등은 제기된 공소에 참가할 수 있는 공소참가규정을 두고 있다.

직도 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유력하여 「증인보호법(Zeugenschutzgesetz)」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2004년 6월의 「피해자권리개정법(Opferrechtsreformgesetz)」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게 i) 법관 또는 감정인의 기피신청권, ii) 질문권, iii)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질문에 대한 이의신청권, iv) 증거조사청구권 및 의견진술권, v) 상소권 그리고 vi) 공판의 재정권 등에 이르는 형사절차상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⁵⁾.

이러한 미국, 독일과 달리 종래 일본은 그 형사소송법이 양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범죄피해자는 증인이외의 형태로는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도 앞에서 지적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은 순수한 의미의 범죄피해자대책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범죄피해자보호이법」⁶⁾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에 관한 심정의 진술(형사소송법제292조의2)과 형사화해(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제4조 이하)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재판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피해자의 법적권리로써 인정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대전제 하에 이 권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9].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은 그 후 직접 형사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그 시책을 강구한 2004년의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계

5) 객관적 의무를 지지 않는 공소에 참가하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형사절차상 포괄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조수로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형적 공격무기인 증거조사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기소자위의 이중점거」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6) 범죄피해자보호이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검찰시사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기본법을 근거로 2005년에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에 비로서 「범죄피해자등권리의익의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상 보호의 객체이며, 권리의 주체로서 그 지위를 적극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의 참가를 인정하게 되었나^[10]. 즉 범죄피해자 등은 특정한 범죄⁷⁾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 i)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음은 물론 ii) 증인신문, iii)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iv)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전술할 권한을 가진 「피해자참가인」이라는 특별한 지위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3.3 제3차 피해와 그 대책

앞에서 살펴 본 제1차 피해 및 제2차 피해로 인한 부수적 피해 중에 정신적·심리적 쇼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를 「제3차 피해」라고 한다. 결국 이것은 제1, 2차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 대책의 미비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3차 피해가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베트남전쟁을 경험한 귀환병들이 겪는 트라우마(Trauma)가 범죄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하여,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분류와 진단 안내서인 DSM-III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정된 후였다^[11]. 제3차 피해는 범죄피해자에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구별하면, 범죄 직후에 나타나는 급성스트레스 장애(ASD)와 피해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에 나타나는 심적외상후 스트레스(PTSD)가 있다.

ASD의 특징적인 것은 「해리(解離)」라고 하는 증상에 의하여 감정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7) 소송참가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개인의 존엄을 크게 해하고, 피해자 측의 강력한 요구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한정하였다. 즉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시킨 죄, 강제추행 및 강간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자동차운전과실치상죄, 체포 및 감금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 등이다.

감각, 현실감의 상실, 범죄피해의 중요한 장면을 잊어버리는 건망증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은 피해자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무의적으로 피해체험을 회피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대부분 일시적 현상으로써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PTSD의 특징적인 것은 「침입(侵入)」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충격적인 피해체험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거나, 강한 심적인 고통이나 의식이 마비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주간에는 사회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야간에는 불면으로 피로워하게 되어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데 커다란 장해가 된다[12]. 이와 같은 정신적 상처(특히 PTSD)가 바로 피해자의 인격적 상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범죄피해 중에서 제3차 피해가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방지 및 회복은 범죄피해자 대책의 핵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카운슬링 및 의료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범죄피해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활동은 민간단체에 그 대책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각국은 민간단체에 의존하며 공적인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조직을 그 성격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⁸⁾ 이 가운데 비영리민간조직은 그 조직의 수나 연혁 및 활동영역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조직은 1972년에 최초로 설립된 이래 전국적으로 현재 약 만개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국피해자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Victim Assistance)」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enter)」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지원되고 있는 단체이다.

NOVA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i)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각종 정책제안자로서의 활동, ii)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업무, iii)피해자 전문가집단에 대한 지원, iv)회원확보와 회원을 위한 서비스 등이 있다[13]. 이처럼 NOVA는 피해자의 법적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는 로비단체인데 반하여, NCVC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활동을 주된 목표로 하는 단체로서 그 성격은 다르지만, 이들 기관과 지역 사법기관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개인 및 단체의 기부와 연방정부에 의한 경제적 원조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다[14].

독일은 1974년에 비영리단체인 「백색연대(Weißer Ring)」를 조직하여 현재 인접한 덴마크, 벨기에 등의 국가를 포함하여 약 400개가 넘는 지부를 두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지원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과의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제적 기반으로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교통관련사법의 벌금 일부의 할당이 그 주된 재원이다[15].

일본은 1990년대까지 민간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1991년 「범죄피해자금부제도발족 10주년기념 심포지엄」에 참가한 피해자가 정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동경의과치과대학은 「범죄피해자상담실」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 「피해자상담실」과 「피해자지원센터」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 이러한 조직을 통합한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지원협의회」도 설립되었다. 협의회 산하에는 성범죄피해자, 소년피해자, 교통사고피해자, 악덕상술의 피해자 등에 관한 실무차원의 지원분과를 두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16].

8) 미국의 피해자지원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 경찰에 기반을 둔 조직, 검찰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구분한다.

4. 결론

정보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앞에서 다른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각국은 피해자화에 따른 분류에 따라 그 대책을 검토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즉 초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개선을 통한 각종의 보호대책, 그리고 1985년 유엔범죄방지회의 이후, 민간단체와 연계한 정신적 지원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하여 매우 늦었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1981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배상명령제도와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을 그대로 계수한 1987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시작으로 피해자 보호대책을 실시하여 왔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 본 각국의 대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피해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경제적 지원은 아래 <표 1>와 같이 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액수의 비현실성 및 특정범죄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2011년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안⁹⁾은 동일 목적의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통합하여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6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확보는 여전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985년 제7회 유엔범죄방지회의에서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보상 이외에 정보제공 등이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하여, 각국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절차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표 1>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자료: 검찰통계시스템(한), 경찰청(일))

		2008년	2009년
한국	건수	155	205
	지급액	1,411,000원	2,204,833원
일본	건수	407	566
	지급액	907,000,000엔	1,277,000,000엔

우리나라도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 있어서 진술할 권리를 인정(제27조5항)한 이래,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강화(제294조의2),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공판기록의 열람·등사(제294조의4) 등 그 권익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소극적인 참여로써 「제2차 피해」에 대한 방어적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아직도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의 주체 아니라 객체로 취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처럼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포괄적 권리인 인정하여 전형적 공격무기인 증거조사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현행 소송법체계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범죄피해자에게 소송주체로서의 지위에 걸 맞는 개별적인 권리인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범죄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범죄피해 중 정신적·심리적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피해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제3차 피해」의 원인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회복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국은 국가기관의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한 지원을 백하고 있다.

9) 4월21일 국회를 통과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요건을 범죄로 인하여 사망과 모든 장해를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상해까지 확대하여 완화하였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신설과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돋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구미·김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에 56개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센터가 민간 단체와의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것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실시하는 것이 그 회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각 부처별로 지원정책을 펴왔으나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며 피해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 [10] 推橋隆幸(2007), 犯罪被害者等の権利保護成立の意義, 刑事法ジャーナル, 5頁.
- [11] 四方光(2007), 犯罪被害者支援, 立花書房, 91-92頁.
- [12] 林 美月子(2004), PTSDと傷害, 神奈川法學 36卷3号, 219頁.
- [13] NOVA에 관하여 <http://www.trynova.org> 참조.
- [14] NCVC에 관하여 <http://www.ncvc/main.aspx> 참조
- [15] 宮澤浩一(1996), 白の環の近況, 罪と罰33卷4号, p.51.
- [16] 일본의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 관해서는 <http://www.nnvs.org> 참조.

참 고 문 헌

- [1] Karmen, A.(2001), Crime victims :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4th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2.
- [2] 吉岡一男(1996), 刑事學, 青林書院, 7頁
- [3] 西村春夫・高橋良彰(1988), 高齢者の各種被害體験と被害化の要因の分析, 科學警察研究所報告防犯少年編29卷1号, 14頁
- [4] 諸澤英道(1991), 犯罪被害者學から一般被害者學へ, ジュリスト991号, 21頁.
- [5] 최인섭·이순래·조균석(2006),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06-03, 103-106면.
- [6] 奥村正雄(2006),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同志社法學59卷1号, 1頁.
- [7] 中川かおり譯(2005), 2004年萬人の司法節次法(犯罪被害者の権利を確立し検査充實を図るための米國の法律) 外國の立法226号, 1頁.
- [8] National Victim Center, Victim's Right Sourcebook, Section 5, 1996.
- [9] 川崎英明(2007), 刑事裁判への被害者参加制度の批判的検討, 季刊刑事辯護50号, 90頁.

정보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와 정책

김 형 만†

한글 요약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1차 피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키 워드 : 정보화 사회, 피해자보호제도, 피해자학의 변천, 범죄 피해자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10)



김 형 만

1986 송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88 일본明治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95 일본明治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1996.9~2008.2 대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2008.3~현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사실인정, 오판, 피해자소송 참여

E-Mail: hmkim57@gwangju.ac.kr